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권한위임사무중 수질관리과소관 제1호중 가목 내지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타목 다음에 하목 내지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수질관리 과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.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위한 조사등 나. 지하수개발·이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지정 명령 및 폐쇄명령등 라. 지하수개발·이용자 및 시공업자에 대한 청문 및 의견청취 	<p>지하수법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제5조제2항 내지 제5항</p> <p>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제2조내지제5조</p> <p>법제8조 령제13조</p> <p>법제11조 령제17조 및 제18조</p> <p>법제35조제1호 내지 제4호 령제42조</p>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수질관리 과		<p>마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명령등</p>	<p>법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령제23조및제24조</p>
		<p>바.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</p>	<p>법제13조 령제21조</p>
		<p>사. 지하수오염방지조치명령등</p>	<p>법제16조제2항 령제25조및제26조</p>
		<p>아. 지하수이용실태조사 (단,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는 제외)</p>	<p>법제17조제2항 및제3항 령제28조제1항</p>
		<p>자. 지하수 수질검사의수리, 시료 채취후 봉인 및 검사결과의 조치</p>	<p>법제20조 령제29조 및 령 제30조제2항,제 3항 지하수의수질보 전등에관한규칙 제8조</p>
		<p>차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의 출입검사등</p>	<p>법제21조</p>
		<p>카.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, 일시 사용 및 장애물 제거 관련허가</p>	<p>법제31조제2항 및 제3항 령제41조</p>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수질관리 과		<p>타. 과태료부과·징수, 의견진술기 회부여 및 이의신청처리(위임된 사무에 한함)</p> <p>하.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</p> <p>거. 지하수개발·이용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공사착공 및 준공 신고등</p> <p>너. 지하수개발·이용허가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조치</p> <p>더.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</p> <p>러.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자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및 조사(위임된 사무에 한함)</p>	<p>법제41조 령제44조</p> <p>법제7조 령제8조내지 제 12조</p> <p>법제9조 령제14조</p> <p>법제10조 령제16조</p> <p>법제14조 령제22조</p> <p>법제34조</p>